



**교외수업 및 집중이수제 실험실습비  
집행 세칙**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제정일  | 2020. 8.10 |
| 개정일  | 2021. 4.15 |
| 개정차수 | 1차         |
| 담당부서 | 학사운영과      |

제 1조 (목적) 이 세칙은 학생들의 교외수업 및 집중이수제 실시에 사용하는 실험실습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하여 집행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 이 세칙의 적용 범위는 교외수업 및 집중이수제에 사용되는 실험실습비로 한다.

제 3조 (교외수업 및 집중이수제 정산방법) ① 지출증빙은 세금계산서 또는 학부(과)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한다.

② 법인카드의 경우, 실습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내에 결제한다.

③ 교외 수업과 집중이수제 수업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집행 결과보고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1. 4.15)

④ 지출 증빙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4조 (집행 가능 항목) 실험실습비 집행 가능 항목은 수영장, 스키장, 경마장, 공연장, 스튜디오, 버스(트럭) 임차, 집중이수제 수업 간 발생하는 숙박비 등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의 임차 및 사용료로 정한다.

제 5조 (집행 불가능 항목) 실험실습비 집행 불가능 항목은 음식점, 주점, 편의점, 마트에서 지출하는 항목으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